

로씨야련방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

로씨야련방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아래부터는 《체약쌍방》이라고 함)는 체약일방의 투자자들이 체약타방의 령토안에서 투자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며 이와 같은 투자를 장려하고 호상 보호하는것이 호혜적인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것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에서

1) 술어 《투자자》는 체약일방국가의 공민인 임의의 자연인과 체약일방국가의 법에 따라 조직된 임의의 법인을 의미한다.

2) 술어 《투자》는 체약일방의 투자자가 체약타방의 법에 따라 그 령토안에 출자하는 모든 형태의 자산 특히 다음의것들이 포함된다.

-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지당권을 포함한 해당 재산권
- 자금과 주권, 출자금 및 기타 참가형태
- 경제적가치조성을 위해 출자하는 자금 혹은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봉사에 대한 청구권
- 저작권, 발명권, 공업결본, 상품표식이나 봉사표식, 회사명, 기술공정 및 기술비결
- 자연부원의 탐사, 개발, 운영권을 포함하여 법이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업활동실행권

ㄷ) 술어 «수입금» 은 이 조의 ㄴ항에 준하여 진행된 투자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금액, 특히 리윤, 리익배당금, 리자, 특혜상금, 및 수수료, 기술방조 및 기술봉사지불금 기타 상금을 의미한다.

ㄹ) 술어 «령토» 는 로씨야련방 령토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토와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는 전속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의미한다.

제 2 조

1. 매 계약일방은 계약타방의 투자자들이 자기의 령토안에서 투자를 실현하는것을 장려하며 자기의 법에 준하여 이러한 투자를 허가한다.

2. 매 계약일방은 자기의 법에 따라 계약타방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법적보호를 담보한다.

제 3 조

1. 매 계약일방은 자기의 령토안에서 계약타방 투자자들이 실현하는 투자와 이러한 투자와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와 리용을 방해할수 있는 차별적성격을 띤 조치들의 적용을 제거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을 보장하여준다.

2. 이 조의 1항에 지적된 조건은 자체의 투자자들이나 그 어느 3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혹은 그와 관련한 활동에 제공되는 조건보다 못지않게 유리하여야 한다.

3. 매 계약일방은 이 조의 2항에 따라 제공되는 국내조건의
예외조건을 자기의 법에 보존하거나 규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이 조의 2항에 따라 제공되는 최혜국조건은 계약일방이 자
유 무역지대와 관세동맹 혹은 경제동맹에 참가하는것과 관련하여 제
공하고있거나 앞으로 제공하게 될 특혜, 로씨야련방이 이전에 소비
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 속하였던 국가들과 맺은 협정에 따라 제공
하고있거나 앞으로 제공하게 될 특혜, 2중과세방지협정 혹은 기타
과세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있거나 앞으로 제공하
게 될 특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타방의 령토안에서 실현된 계약일방 투자자들의 투자는 국
유화 또는 그와 같은 조치가 법에 제정된 절차에 따라 사회적리
익을 위하여 취해지거나 차별조치가 아닌 경우 그리고 즉시적이고
등가적이며 효과적인 보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화되거
나 그 후과에 있어서 국유화와 같은 조치(이하《국유화》라고 함
)를 당하지 않는다.

보상액은 실제적인 국유화의 실현 혹은 앞으로 있게 될 국유
화에 대하여 공식 알려진 순간까지의 국유화되는 실지 투자금액과
같아야 한다.

보상액은 무근거하게 지연시킴이 없이 자유전환성화폐로 지불되
여야 한다.

지불순간까지의 보상액에는 투자가 실현된 그 계약일방의 리자
률에 준하여 리자가 가산된다.

제 5 조

매 계약일방은 계약타방의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해당 세금과 수수료를 지불한후에 투자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지불액을 해외로 지장없이 송금한다는것을 담보한다.

- ㄱ) 이 협정의 제1조 ㄷ항에 규정된 수입금
- ㄴ) 계약쌍방이 투자로 인정한 대부상환으로 지불하는 금액
- ㄷ) 투자의 부분적인 혹은 완전한 청산 혹은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가가 받은 금액
- ㄹ) 이 협정의 제4조에 지적된 보상금

제 6 조

계약일방과 계약타방의 투자가사이에 보상액 지불규모, 조건 혹은 절차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비롯하여 투자실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이 발생한 순간부터 6개월내에 분쟁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 분쟁은 다음과 같은 기관들의 심의에 넘길수 있다.

- ㄱ) 투자가 실현된 계약일방의 권한있는 재판소 혹은 중재재판소
- 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운씨프탈) 의 중재규정에 따라 AD HOC 중재재판소

제 7 조

계약쌍방은 임의의 계약일방의 제의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수 있다.

제 8 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쌍방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회담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조절할수 없는 경우 임의의 계약일방의 요구에 따라 분쟁은 중재재판소의 심의에 넘긴다.

2. 중재재판은 매 구체적인 경우에 따로 조직된다.

계약쌍방은 재판성원 1명씩 임명하며 공동으로 제3국공민을 재판장으로 임명한다.

재판성원들은 계약쌍방중 어느일방이 분쟁을 중재재판소의 심의에 넘길 의향을 표명한 순간부터 2개월내에, 재판장은 3개월내에 임명하여야 한다.

3. 만일 이 조의 2항에 지적된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합의가 없으면 매개 계약일방은 필요한 임명을 해줄데 대하여 국제재판소 소장에게 제기할수 있다.

4. 중재재판소는 다수가결로 자기의 결정을 채택한다.

그러한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매개 계약쌍방은 자기가 임명한 재판성원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며 재판장의 활동과 관련한 비용과 기타 비용은 계약쌍방이 같은 몫으로 부담한다.

다른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재재판소가 자체로 자기의 사업절차를 규정한다.

제 9 조

이 협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체약타방의 령토안에서 체약타방의 투자자들이 실현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10 조

1. 이 협정은 체약쌍방이 효력발생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한데 대한 서면통지를 마감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협정은 1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협정의 효력기간은 체약쌍방중 어느 일방도 이 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킬데 대한 자기의 의향을 해당 기간이 끝나기 12개월전에 체약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한 다음 5년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효력이 중지되기전까지 실현된 투자에 대해서는 협정의 효력이 중지된날 이후부터 다음 15년동안 이 협정의 규정들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협정은 1996년 11월 28일 모스크바에서 로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로 씨 야 련 방 정 부 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를

대 표 하 여

대 표 하 여

E. Jem

김정일